論 壇

데이타 베이스의 法的保護

金 寬 衡
〈本會 調査部長〉

目 次

Ⅰ. 개요
Ⅱ. Hessen주의 데이타 보호법
Ⅲ. 데이타베이스 보호의 실태
Ⅳ. 데이타베이스 보호의 입법
Ⅴ. 결어

〈어번號에 全載〉

Ⅰ. 개 요

가. 배 경

오늘의 사회는 경제와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구조의 다양화 및 복지문명 생활의 급속한 향상으로 새로운 정보들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

이와같은 정보는 구조적인 정보로서 가공하고 처리하여 이용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보의 활용처리에 있어 「컴퓨터내에 각종데이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다수 이용자가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축적,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정보의 집합체인 데이타베이스」는 업계정보, 신용정보, 마케팅정보, 법률정보, 뉴스정보, 경제 및 금융정보의 활용이 막중하여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는 이미 주요 국가들이 저작권법 또는 단독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보호방법의 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이에따라 서독연방과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이타베이스의 내용이 담겨져 단독법으로 이루어진 「Hessen주의 데이타보호법」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한다.

나. 제정동기

서독은 연방이나 주정부의 행정업무의 처리과정과 기업 등의 데이타처리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향이 더욱더 증대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성이 높아져 1960년대 후반부터 법률가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를 시작하므로써 연방 및 주정부와 의회의 관심대상이 됨에 따라 1970년에 Hessen 주에서 「데이타보호법」이 성립되었고, 1973년에는 연방데이타보호법이 입법되었으며, 그후 1974년에는 Rheinland-pfhltz 주의 데이터 남용방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다. 특 징

서독 연방과 주 정부의 데이타보호법의 특징은 3권분립의 원칙에 의한 권력배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의회에서도 행정부와 동일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및 이용의 기회균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데이타보호감독 관청을 철저하게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였다. 특히 주의 경우 데이타보호수탁관을 두고 있거나 데이타보호 위원회를 별도기관으로 설치하여 업무를 감시하며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독 「연방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은 ① 관청을 비롯한 기타 공적주체와 ② 자연인 및 사법상의 법인 및 조합, 기타 단체 등이며 정보처리에 있어서는 정보의 처리, 저장, 변환 등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정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과 정보공개 및 정보에 대한 악세스권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서독의 경우는 Hessen 주의 「데이타보호법」이 이루어진 후에 「연방데이타보호법」이 성립되었으며, 다른 주나 타국에서 Hessen 주법을 모델로 삼거나 연구대상으로 하고있다.

Ⅱ. Hessen 주의 데이타 보호법

가. 입법취지

주의회는 데이타보호법 제정전에 이미 1969. 12. 16 「Hessen 데이타 처리센터(HZD) 및 지방자치단체 계산센터(KGRZ)의 설립에 관한 법률」(GVBH. S. 304)을 정하고 주 및 지방공공단체에서 통일적인 데이타 처리시설을 위한 법률상의 원칙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Hessen 주는 주관청과 공공기관이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처리를 위하여 기록의 저장 또는 처리결과인 데이타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1970. 10. 7 서독에서 최초로 데이타보호법을 주입법으로 제정하였다. 입법제안 이유를 보면 데이타처리에 관한 특별보호조치 강구와 데이타처리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 침해의 중지청구권 인정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타뱅크 및 정보시스템의 정보인출과 공표권 제한을 내세우는 한편 독립으로 데이타보호 수탁관 제도설치와 더불어 주관청이나 공공기관 및 주의회의 정보취득권 확보를 제시하였다.

나. 법률의 구성

○제1장 데이타보호
- 제 1조 데이타보호의 범위
- 제 2조 데이타보호의 내용
- 제 3조 데이타 비밀
- 제 4조 데이타보호 청구권
- 제 5조 데이타뱅크 및 정보시스템
- 제 6조 주의회 및 지방의회의 정보취득권

○제2장 데이타 보호수탁관
- 제7조 법적지위
- 제 8조 지위명령으로부터 독립
- 제 9조 수비의무
- 제10조 임 무
- 제11조 불복신청
- 제12조 주의회 등의 조사
- 제13조 보고를 받을 권리
- 제14조 연차보고
- 제15조 보조직원

○제3장 종 장
- 제16조 질서위반
- 제17조 시 행

다. 법률의 주요내용

(1) 데이타보호의 적용범위

데이타보호의 범위는 「주관청, 주의 감독하에 있는 공법상의 단체·시설·재단의 소관으로 하는 기관이 자동데이타 처리의 목적으로 작성된 모든 기록, 저장데이타 및 저장데이타의 처리결과」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이 법률적용범위 특징을 살펴보면 주관청이나 公共團體 등 公的機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타處理에 관하여도 컴퓨타 등 機械에 의한 처리에만 한정하고, 기타 手作業 등에 의한 데이타 處理는 除外하고 있다.

(2) 데이타보호의 대상

자동정보처리인 컴퓨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모든기록, 저장정보 및 처리결과이며 여기에 데이타베이스가 해당된다.(제 1, 2조).

(3) 데이타의 보호요지

데이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록·정보 및 처리결과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열람, 변경, 인출 또는 파기」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기술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조).

(4) 데이타의 비밀

데이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직무상 지득한 정보나 지식을 타에 전달 및 제공을 못한다. 다만 법률상이나 권한 있는자의 승낙이 있는때 및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5) 데이타보호 청구권

데이타처리 당사자에게 데이타보호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서 권한 없는 자(제2조 전단)가 불법 열람, 변경, 파기 또는 인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행위는 이를 중지청구할 수 있다.(제4조).

(6) 데이타뱅크 및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정보 및 이들 처리결과는 데이타뱅크 및 정보시스템의 설립과 주관청이나 공공기관에 쓰기 위하여 이용,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타뱅크 및 정보시스템에 관하여 어떠한 기관도 권한외의 기록과 정보 및 이들 처리결과를 열람 또는 인출할 수 없다. 또한 주관청이나 공공기관 외에는 열람 또는 인출할 수 없다. 특히 자연인 등의 개별적인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제5조).

(7) 데이타보호 수탁관

주정부의 제안에 의거 주 의회에서 보호수탁관을 선임하여(제7조) 사무를 감시케하고 관장하며 법령위반시에는 감독관청에 통보하여 예방조치를 한다.(제10조).

(8) 위법정보제공

데이타의 취득, 전달, 저장 또는 자동정보처리인 컴퓨터처리의 사무를 행하는 자가 데이타의 비밀유지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권한없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는 질서위반이 된다.(제16조).

라. 법률조문

〈생략〉

Ⅲ. 데이타베이스 보호의 실태

가. 보호의 일관성 결여

데이타베이스 보호의 각국 실태를 보면 자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거 편집물 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등으로 일관성없이 보호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 국 : 1976년 저작권법(편집저작물)
- ○영 국 : 1985년 저작권법(편집물)
- ○일 본 : 1986년 저작권법(데이타베이스 자체, 창작성저작물)
- ○서 독 : 단독법(데이타베이스를 포함한 데이타의 보호)
  - 연방 : 1973. 9. 연방정보 보호법(데이타보호, 데이타남용방지)
  - Hessen 주 : 1970년 데이타보호법(데이타보호, 기록, 정보 및 처리결과)
  - Rheinland-Pfhltz 주 : 1974년 데이타남용방지법(데이타의 보호, 컴퓨터 데이타처리)
- ○스웨덴 : 단독법(푸라이버시 중심)
  - 1973년 데이타법(컴퓨터에 있어서 공사의 개인정보시스템)

나. 기존법으로 보호불가능

우리나라에서 데이타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타베이스의 특성과 상이점 그리고 보호의 영역으로 보아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중 단일법 영역으로는 보호가 불가능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타베이스의 특성

데이타베이스는 컴퓨터를 통하여 기존정보를 가공한 독창성이 있는 창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독창성이 없는 경우도 있음) 특허법상의 창작성이 있고 저작권법상의 표현성이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법상의 표현성이 있는가 하면 영업비밀과도 유사하다. 그러므로 특허물성,

저작물성, 프로그램물성이 있는 전자기술로 가공된 정보의 특성이 있다.

(2) 상이점

○데이타베이스는 컴퓨터내에 각종데이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축적,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정보의 집합체로서 단순한 정보의 표현이며 기존 정보를 가공하는 창작이다.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독자적인 저작물인 편집저작물로서 학술적 표현성이 강하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며 산업상 이용성 및 신규성이 있고 진보된 창작이다.

(3) 타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유

데이타베이스를 현행법으로 보호할 경우에 저작권법으로는 특허물성(기술적 창작)이 미보호되고, 특허법은 저작물성(인쇄물)이 보호되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컴퓨터내의 정보유출(무단정보검색) 방지가 어렵다. 그리고 영업비밀법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되지 않고 있으나 단순한 정보의 보호(창작물이 아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권리자 및 수요자의 불이익초래

데이타베이스를 기존의 지적재산권 중 하나의 법으로 보호할 경우, 데이타베이스 등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의 다원화로 권리자 및 수요자의 불이익이 초래된다.

현재 보호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저작권은 문화부이고, 특허권은 특허청에서 설정보호하며, 컴퓨터프로그램은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는가 하면 반도체 칩은 현재 입법되지 않은 상태이며, 데이타베이스도 아직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채 미정이다.

Ⅳ. 데이타베이스보호의 입법

21세기를 겨냥한 미래지향적인 선진국 조기진입을 위하여 첨단기술개 발 등 정보화시대에 대처하는 한편 현대사회의 실정을 보면 데이타베이스 산업이 세계산업을 주도하는 육성업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및 서독 등에서 이미 보호를 함에 따라 성장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을 볼 때 이미 100여종의 DB를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 전망이 밝아서 보호할 가치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사견으로는 우리나라의 데이타베이스가 특허물성과 저작물성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성이 혼합된 전자 기술로 가공된 정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법률로는 전반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며 단독법인 서독의 연방과 주 데이터보호법을 감안하여 우리도 관계기관 등이 보호의 타당성을충분히 검토한 후에 특별형태의 「단독법」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Ⅴ. 결 어

데이타베이스보호의 서독 연방과 주법을 살펴본바와 같이 Hessen 주의 데이타보호법이 서독에서 최초로 입법되었으며, 다른 주나 타국에서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수한 법임을 알 수 있다.

이 법률의 특징은 주 정부관청이나 공법상의 단체 등 공적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권한없는 자에 의한 열람, 인출(복제) 등을 방지하여 비밀을 엄수하며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데이타의 사용은 데이타뱅크 및 정보시스템에 관하여 주 관청이나 공적기관에서 이용, 전달하는 데만 쓰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데이타베이스의 보호실태 및 입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새로운 첨단기술 정보 등의 다량생산과 활용에 대한 정보화시대에 당면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사견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한 우수한 정보가 국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고 나아가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발전 및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적정한 시기에 서독과 유사한 데이타베이스 보호법을 단독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